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25호)

2026. 9.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철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정비	2
2. 피해자 보호 취지의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제도 관련 정비 ..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9. 9.
3. 회 부 일 : 2026. 9.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과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정비

개정안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에 맞추어 현행법 상 검사의 수사 관련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호·제3호, 제7조, 제11조제1항제7호,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생략) 2. <u>수사</u> 및 재판 절차와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u>수사</u>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4. (생략)	제6조(피해자의 권리) ----- -----. 1. (현행과 같음) 2. <u>수사, 공소</u> ----- ----- 3. <u>수사, 공소</u> ----- ----- ----- 4. (현행과 같음)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신매매등범죄의 <u>수사</u> 및 재판 절차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u>수사, 공소</u> ---- ----- ----- ----- ----. ----- ----- -----.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등) ①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인신매매등범죄의 <u>수사</u>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7. ----- <u>수사, 공소</u>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u>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u>)	제19조(<u>수사 및 재판절차 등에서의 배려</u>)
① <u>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u> 은 범죄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u>조사</u>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u>수사기관, 검사, 법원</u> ----- ----- ----- ----- <u>사실관계 확인이</u> <u>나 면담 또는 조사</u> ----- ----- -----.
제23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u>수사과정</u> 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	제23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① ----- ----- <u>수사과정(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u> <u>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

현행	개정안
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 지원시설 등 지원단체에 연계하여 <u>수사 절차상 조력 및 상담 지원</u> 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 ----- ----- ----- <u>형사절차</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① (생략)	제24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이 인신매매등의 유인·강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u>수사에</u> 참작하여야 한다.	② ----- ----- ----- ----- ----- <u>때(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를 말한다)</u> ----- ----- <u>수사 및 처분에</u> -----.
제44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① <u>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u>	제44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① <u>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외국인</u>

현행	개정안
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u>수사 및 재판 절차상</u>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u>수사기관</u> 및 법원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u>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u> <u>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u> <u>-----.</u> ② <u>수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u>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제정·시행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및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¹⁾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등으로 규정함에 따라²⁾ 현행 법률의 내용 중 검사의 수사권과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은 i)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권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ii) 검사의 직접적인 영장의 청구와 집행은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전제로 한 영장의 청구와 사법경찰관에 의한 집행만 가능하게 하며, iii)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 폐지 및 상호 협력으로 대체하며, vi)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며, v) 검사의 피해자 의견청취 절차 및 이의신청·재정신청권자 확대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임.

2) 「공소청법 제정법률」(법률 제21490호, 2026. 8. 4. 공포, 10.2. 시행)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과의 협의·지원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재판 집행 지휘·감독

관련된 사항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권리(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제11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제19조),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23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제24조), 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제44조) 등 현행법상 검사의 수사권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공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공소청의 설치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특히 안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에서는 종전의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사의 경우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를 말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음. 이는 검사의 업무 범위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과 구별된다는 점을 명시함과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검사로 사건이 송치된 후 피해자 보호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이해됨.

안 제44조제2항에서는 공소와 관련된 기관의 범위를 공소청(광역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으로 규정하였음. 이는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종전의 「검찰청법」에서 “검찰청”이 검찰 전체 조직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과 달리,³⁾ 「공소청법」에 따른 “공소청”은 종전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조직을 의미하므로,⁴⁾ 종전 규정의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기관이 공소청뿐만 아니라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괄하는 의미임을 명시하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는 현행 제3장의 제목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에 공소를 추가하는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검사 및 공소청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여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며, 개정안의 공소 관련 규정 신설 취지를 장 및 조문의 체계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3장의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검찰청법」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4) 「공소청법」 제2조(공소청) 검사(檢事)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을 둔다.

2. 피해자 보호 취지의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제도 관련 정비

개정안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등의 면담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 상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조사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4조제3항,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생략) ② 제1항은 <u>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u>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현행과 같음) ② ----- <u>검사 또는 수사기관</u> --- <u>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u> <u>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u> <u>의13에 따른 사실관계 및 면담을</u> <u>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를</u> <u>하는</u>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u>법원과 수사기관</u> 은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범죄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u>법원,</u> <u>검사 및 수사기관</u> ----- ----- ----- ----- -----.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인신매매 등 <u>조사·심리</u> 에 관하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 -- <u>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u> <u>조사·심리</u> ----- -----

현행	개정안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u>수사기관과 법원</u> 및 소송관계인은 범죄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u>조사</u>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u>수사기관과 법원</u>은 범죄피해자를 <u>조사하거나</u> 심리·재판할 때 범죄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u>조사 및 심리·재판</u>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① (생략) ③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리는 <u>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u>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지원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 -----. 제19조(수사 및 재판절차 등에서의 배려) ① <u>수사기관, 검사, 법원</u> ----- ----- ----- <u>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u> ----- ----- -----. ② <u>수사기관, 검사 및 법원</u>은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u>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거나</u> ----- ----- --- <u>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재판</u> -----. 제24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① (현행과 같음) ③ ----- <u>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u> ----- -----. 제34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 -----

현행	개정안
한다. 1. ~ 4. (생략) 5. <u>수사기관의 조사</u>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6. ~ 11. (생략) ② ~ ⑤ (생략) 제44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① <u>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u>	---. 1. ~ 4. (현행과 같음) 5. <u>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u>----- ----- 6. ~ 11.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① <u>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u> <u>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u>----- ----- -----.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⁵⁾에서는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또는 불송치사건의 재수사요구 여부 결정,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하거나 고소인 등과의 면담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였음.

개정안은 이를 반영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17조), 진술

5)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력인 지원(제18조), 수사 및 재판절차 등에서의 배려(제19조), 불법 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에 관한 고지(제24조), 일반지원시설의 동행 업무(제34조), 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제44조)에 관한 규정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 가능하도록 추가한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입법조치에 해당함.

다만, 현행 제23조제4항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자등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⁶⁾ 개정안에는 검사가 사실관계 또는 면담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검사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또는 면담 과정에서 신고자등의 신원보호 등이 명시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보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23조 제4항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644

6) 제23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① ~ ③ (생략)

④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자등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등”은 “신고”로, “범죄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